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2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한병도·박지원·박 정

김영배 • 윤준병 • 임호선

이기헌 · 서영교 · 이광희

황운하 · 이해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자치분권 사전협의'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·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, 국가 지도·감독 의 적정성, 자치입법·조직·인사·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.

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 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 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자치분권 사전협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1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·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·변 경·폐지에 관한 사항
 - 2.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
 - 3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 · 감독에 관한 사항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, 제12조에 따른 사무처리의기본원칙과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,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・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세부 검토 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 ✓ 선 설> 제15조의2(자치분권 사전협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1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・재정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신설・변경・폐지에 관한 사항 2.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・감독에 관한사항 4. 학자 기관의 장은 제1항
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 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법령안이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, 제12조에 따른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,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반 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 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전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・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⑥
 제1항
 및
 제3항에
 따른
 협

 의를
 위한
 세부
 검토
 기준
 등

 그
 밖의
 필요한
 사항은
 대통령

령으로 정한다.